##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위성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153

발의연월일: 2022. 11. 8.

발 의 자:위성곤·윤재갑·김원이

양정숙・이개호・소병철

최인호 · 김승남 · 윤영덕

김홍걸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·보호를 위해 비어업인은 수산자원을 포획·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. 하지만 최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·채취활동이 늘어나면서 어업인과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

또한 각 지역별로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종류 및 생태계가 달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·채취에 대한 기준을 시·도가 별도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어업인이 포획·채취할 수 없는 수산자원의 종류·마릿수·방법·도구·구역 및 시기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함으로써,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과의 갈등을 방지하고, 시·도에서 지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비어업인의 포획·채취에 대한 기준을 별

도로 정할 수 있게 하여, 이를 비어업인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하는 등 효과적인 수산자원의 번식·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(안 제18조, 제65조, 제70조).

법률 제 호

###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8956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,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「수산업법」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(이하 "비어업인"이라 한다)의 수산자원 포획·채취에 대하여 포획·채취할 수 없는 수산자원의 종류, 도구, 시기, 지역, 수량 등을 제한(이하 "비어업인의 포획·채취 기준"이라 한다)할 수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비어업인의 포획·채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·광역시·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·도의 조례로 비어업인의 포획·채취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- ⑤ 비어업인은 포획·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. 제65조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

다.

2의2.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포획·채취한 수산자 원을 판매한 자

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제1호 중 "제18조제2항"을 "제18조제5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 및 제2항"을 "제1항부터 제3항까지"로 한다.

①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·채취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8956호 수산자원관리법	법률 제18956호 수산자원관리법
일부개정법률	일부개정법률
제18조(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	제18조(비어업인의 포획・채취의 제
제한) ① 「수산업법」 제2조제	한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「수산업
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	법」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
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	인이 아닌 자(이하 "비어업인"이라
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	한다)의 수산자원 포획·채취에 대
포획·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.	하여 포획·채취할 수 있는 수산자
	원의 종류, 도구, 시기, 지역, 수량
	등을 제한(이하 '비어업인의 포획・
	채취 기준'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<u>&lt;신 설&gt;</u>	② 제1항에 따른 비어업인의 포획
	•채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
	<u>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
	역시・시・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
	<u>하 "시·도"라 한다)는 관할 수역의</u>
	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
	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
	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·도의 조
	례로 비어업인의 포획・채취 기준
	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②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⑤ 비어업인은 포획・채취한 수산

제65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1. (생략)
- 2.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・채취한 자

<신 설>

3. ~ 10. (생 략) 제70조(과태료) <신 설>

① (생략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 산자원을 포획・채취한 자
  (생 략)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해양수산부장관, 수산에

<u> 자원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.</u> 제65조(벌칙)
·.
1. (현행과 같음)
<u>&lt;삭 제&gt;</u>
2의2.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어
업인으로서 포획·채취한 수산자
원을 판매한 자
3. ~ 10. (현행과 같음)
제70조(과태료) ① 제18조제2항 및 제
3항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.
채취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
과태료를 부과한다.
② (현행 제1항과 같음)
<u>③</u>
1. <u>제18조제5항</u>
2. (현행과 같음)
<u>④</u> 제1항부터 제3항까지

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	
장 또는 시 • 도지사가 부과 • 징	
수한다.	<u>.</u>